

<p>제2021-129호 2021년 7월 6일(화)</p>	<p>시  보 여수시</p>	<p>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청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고 시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1-1914호 「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
- 여수시 공고 제2021-1915호 도로지정공고(화정면 낭도리 663)
- 여수시 공고 제2021-1916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공 고

「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7. 6.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」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「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개선율」 과제 확정으로 규제개선 반영
- 현행 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

2. 주요내용

-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반영
 - (제3조 제3호) 대행업 지정신청 구비서류 중 “ 대표자주민등록초본” 규정을 삭제
 - (제6조 제5호) 대행업 결격사유 중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여수시 관내 주소제한을 삭제
- 별첨 신고서식 변경
 - [별표 3]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
 - [별지 제1호 서식]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

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7. 6. ~ 7. 26.(20일간)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수도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제출 사항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- 주 소 : 우)59761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(국동)
-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수도행정과)
- 전 화 : 061-659-4855, 팩 스 : 061-659-5858
- 이 메 일 : chinysun06@korea.kr
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일부개정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호 “대표자 주민등록초본”을 삭제한다.

제4조 제2항 중 “배관기능사 이상, 토목.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(단, 상수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)로서”를 “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토목.기계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5호 “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가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”를 삭제한다.

제11조 제1호 중 “소켓트”을 “소켓”으로, “넙쁘르”를 “니플”로 한다.

제12조 제1항 중 “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”를 “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신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신고하여야 한다(별지 제1호서식)”로 한다.

별첨 신고서식 중 별표 3 “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” 개정한다.

별첨 신고서식 중 별지 제1호 서식 “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”를 “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(변경)신청서”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지정신청)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3. 2. 27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2. 이력서 3. <u>대표자 주민등록초본(개정 2013. 2. 27)</u> 4. 사무실 및 창고 건축물관리대장 5. 종사원 신고서(별지 제4호 서식) 6.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(별지 제5호 서식) 7.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(제4조 기준) 8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9.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(법인일 경우)제4조 기준 10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	<p>제3조(지정신청)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삭 제>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 7. (현행과 같음) 8. (현행과 같음) 9. (현행과 같음) 10. (현행과 같음)
<p>제4조(지정기준)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<u>배관기능사 이상, 토목.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(단, 상수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)로서</u>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.(개정 2000. 12. 22, 2013. 2. 27)</p>	<p>제4조(지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토목.기계분야 초급Ⅴ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업무에 1년Ⅴ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-----</p>
<p>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<u>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가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</u> (신설 2013. 2. 27) 	<p>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<삭 제>
<p>제11조(자재)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파이프, 수도꼭지, 밸브, 지수전, <u>소켓트</u>, 유니온 및 <u>납뽀르</u> 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 2.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 	<p>제11조(자재)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소켓,----- 니플----- 2. (현행과 같음)
<p>제12조(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)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<u>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</u> 계약에 위반된 시</p>	<p>제12조(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) ① ----- -----<u>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</u>-----</p>

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3. 2. 27)

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

제18조(대행업자의 신고사항)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 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한 때
2.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
3.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한 때 (개정 2013. 2. 27)
4. 종사원의 이동이 있을 때
5. 그 밖에 지정신청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(개정 2000. 12. 22, 2013. 2. 27)

별표 3

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(제7조와 관련)			
항목	기준		배점 평점
총 계			100
합 계			25
1. 시공능력	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(전문건설협회발급)	20억이상	25
		15억이상~20억미만	23
		10억이상~15억미만	21
		10억미만	19
합 계			25
소 계			10
시공기술자보유(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)		기준보유 (2명)	10
소 계			15
2. 기술능력	시공기술자의 경력(합산) (기술인협회발급)	20년이상	15
		15년이상~20년미만	13
		10년이상~15년미만	11
		5년이상 ~ 10년미만	9
		5년미만	7
합 계			20
소 계			10
3. 경영상태	부채비율(부채총계/자기자본) (전문건설협회발급)	30%미만	10
		50%미만	9
		75%미만	8
		100%미만	7
		100%이상	6
	소 계		
유동비율(유동자산/유동부채) (전문건설협회발급)	200%이상	10	
	150%이상	9	
	100%이상	8	
	50%이상	7	
	50%미만	6	
합 계			20
4. 보유장비	"별표 1의 보유 장비" 및 추가장비 각 1점 가산	"별표 1"의 보유장비	15
		래머(80kg 이상)	1
		콤팩터(1.5톤 이상)	1
		포장절단기	1
		발전기(5kw 이상)	1
		누수탐지기	1
소 계			10
5. 면 접	○ 상수도 관련지식 습득 여부(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)		5
	○ 적절한 자재사용 및 방법 등 시공능력 여부		5
6. 행정처분 감점	- 대표자 개인 국제·지방세 체납여부: 감점 5점 - 최근 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: 1회당 1점, 최고 감점 3점 (전문건설협회발급)		

<비 고>

1.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, 기술능력, 경영상태 장비 및 면접의 배점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, 제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며, 모든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.
2. 면접은 신청자(대표자) 또는 선임기술자중 1인이 참여한다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대행업자의 신고사항) -----

----- (별지 제1호서식)

1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
5. (현행과 같음)

별표 3

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(제7조와 관련)			
항목	기준		배점 평점
총 계			100
합 계			25
1. 시공능력	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(전문건설협회발급)	20억이상	25
		15억이상~20억미만	23
		10억이상~15억미만	21
		10억미만	19
합 계			25
소 계			10
시공기술자보유(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)		기준보유 (2명)	10
소 계			15
2. 기술능력	시공기술자의 경력(합산) (기술인협회발급)	20년이상	15
		15년이상~20년미만	13
		10년이상~15년미만	11
		5년이상~10년미만	9
		5년미만	7
합 계			20
소 계			10
3. 경영상태	부채비율(부채총계/자기자본) (전문건설협회발급)	30%미만	10
		50%미만	9
		75%미만	8
		100%미만	7
		100%이상	6
	소 계		
유동비율(유동자산/유동부채) (전문건설협회발급)	200%이상	10	
	150%이상	9	
	100%이상	8	
	50%이상	7	
	50%미만	6	
합 계			15
4. 보유장비	"별표 1의 보유 장비" 및 추가장비 각 1점 가산	"별표 1"의 보유장비	10
		래머(80kg 이상)	1
		콤팩터(1.5톤 이상)	1
		포장절단기	1
		발전기(5kw 이상)	1
		누수탐지기	1
소 계			15
5. 면 접	○ 상수도 관련지식 습득 여부(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)		10
	○ 적절한 자재사용 및 방법 등 시공능력 여부		5
6. 행정처분 감점	- 대표자 개인 국제·지방세 체납여부: 감점 5점 - 최근 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: 1회당 1점, 최고 감점 3점 (전문건설협회발급)		

<비 고>

1. 동점자 발생시에는 시공능력, 기술능력, 경영상태 장비 및 면접의 배점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, 제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며, 모든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.
2. 면접은 신청자(대표자) 또는 선임기술자중 1인이 참여한다

별지 제1호 서식

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

영 업 장 소 : 여수 읍면동 리 번지
 상 호 :
 전 화 번 호 :
 대표자 성명 :
 생년월일 : 년 월 일

여수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
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여 수 시 장 귀 하

별지 제1호 서식

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(변경) 신청서

업체명	상 호 명 (법인명)	사업지(법인) 등록번호		
	성 명 (대 표 자)	생년월일		
	주 소			
	연 락 처	대표전화	휴대폰	
소재지	사무실	(면적: m ²)		
	창 고	(면적: m ²)		
시공 기술자	성 명	생년월일	고용년월일	상수도 업무 근무년수
				소지자격증
변경 내용	변경전		변경후	
	변경 사유			
「여수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」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상수도 대행 업체로 지정받 고자 위와 같이 지정(변경) 신청합니다.				
				년 월 일 (인)
여수시장 귀하				
구 비 세 류	신청인 제출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신청서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·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. 2.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.(영수시 원본 제시) 3. 사무실, 창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. 4.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사진대지 각 1부. 5.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(금액, 일 건수) 각 1부. 6. 경영상태(부채비율, 유동비율)를 증명할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. 7. 시공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청서 - 변경관련 서류		

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663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계				51.00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화정면 낭도리	663	12.75	4	51	“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7. 6.

여 수 시 장

공 고 (안)

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여수시문화유산 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6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

1. 공고기간 : 2021. 7. 7. ~ 7. 21.(15일간)
 2.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 게재
 3. 위원구성 : 11명(위촉직 10명, 당연직 1)
 4. 위원임기 : 2021. 7. 5. ~ 2023. 7. 4.(2년)
 5. 기 능 : 문화유산의 보존·보호·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 조사·심의
 - 문화유산의 조사
 -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·인정과 해제
 - 문화유산의 환경보전과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
 - 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의 승격과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
 - 지정문화재의 복원·보존·보호·관리의 건의에 관한 사항
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6. 위원명단 : 붙임 참조
- ※ 기타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(☎659-4755)로 문의 바랍니다.

(붙임)

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 위촉 현황

- 임 기 : 2021. 7. 5. ~ 2023. 7. 4.(2년) -

연 번	성 명	소속 및 직책	비 고
1	김병호	(사)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	위촉직
2	김학섭	관광문화교육국장	당연직
3	김인덕	청암대학교 교수 (역사학)	위촉직
4	김향순	현천소동패놀이보존회장	위촉직
5	나현수	여수시의회의원	위촉직
6	문갑태	여수시의회의원	위촉직
7	박태홍	(재)나라문화연구원장	위촉직
8	박 찬	전남대학교 교수 (건축디자인과)	위촉직
9	송은일	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실장	위촉직
10	신응주	조선대학교 교수 (건축학)	위촉직
11	이 욱	순천대학교 교수 (사학과)	위촉직